

2024 03호

CERIK

하이라이트

3.6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 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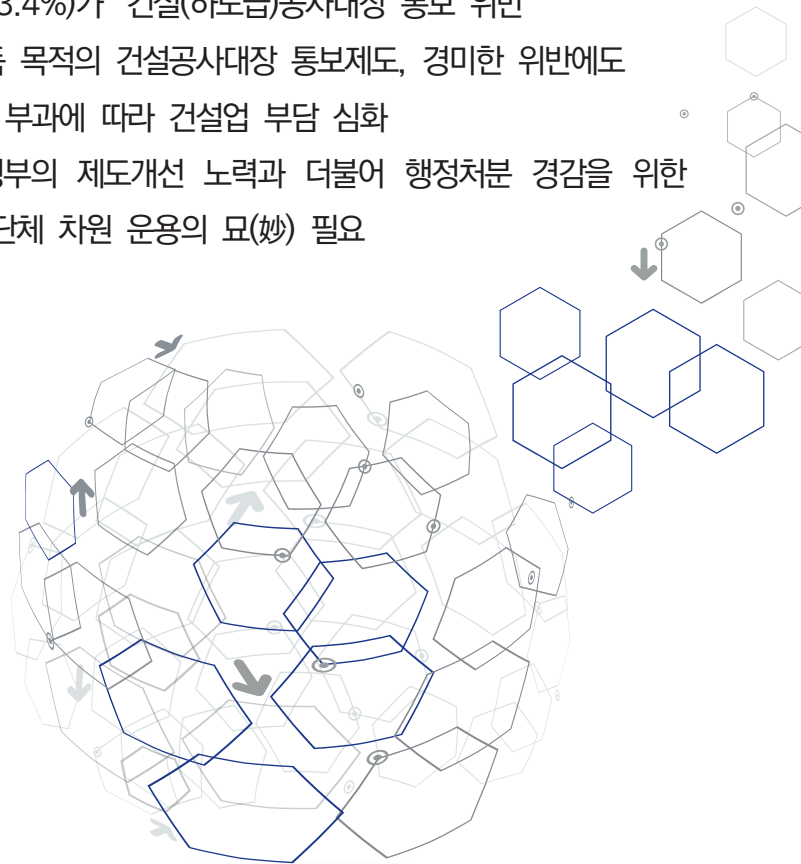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벌 유형 중 약 40%(과태료 부과 건수의 73.4%)가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 위반'
- 통계 획득 목적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경미한 위반에도 행정처분 부과에 따라 건설업 부담 심화
- 입법·행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행정처분 경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 운용의 묘(妙) 필요

CERIK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행정제재와 유형

- ◎ 행정처분은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규제를 통하여 제한한 권리나 부과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기관이 가하는 불이익임.¹⁾
 - 이때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을 통해 규정하는 사항을 의미함.²⁾
- ◎ 규제의 요람(搖籃)이라고까지 불리는 건설산업의 경우 산업을 규율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을 비롯하여 100여 개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행정 법규이며, 개개의 법률에 벌칙 조항과 과태료 조항을 규정하여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 중임.³⁾
 - 이렇게 다양한 행정 관련 법률이 건설산업에 적용되다 보니 건설산업 내 행정처분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더욱이 일부 제재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더불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에 과도한 행정제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 건설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은 행정벌, 행정강제, 행정조사, 행정제재 처분 등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 행정벌과 행정제재 처분을 통한 처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행정벌)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
 - (행정형벌)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행정벌로 건설기업에 대한 행정형벌은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등으로 규정
 - (행정질서벌)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로 일반사회의 법익 또는 행정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으나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의무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구분)
 - (행정강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권의 사실상의 작용으로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의 강제는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로 구분
 -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얻고자 행하는 일체의 행정 활동
 - (행정제재 처분) 국민 또는 기업이 행정 법규나 처분에 따라 부과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대표적으로 행정청이 일정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규와 행정 목적을 고려하여 내리는 부작위 명령인 업무정지, 영업정지, 등록말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과 작위 명령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미)⁴⁾

1) 김영덕(2018), “건설업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 건설동향브리핑 제684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용을 수정 기술함.

2)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3) 강운산(2006), 「건설 관련 처벌 법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용을 수정 기술함.

〈표 1〉 건설기업에 대한 처벌의 유형

구 분	종 류	내 용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행정강제	행정상 강제 집행 행정상 즉시 강제	행정상 의무불이행과 이행강제
행정조사	각종 조사	자료 획득 작용
행정제재 처분	과징금, 공사업 제한, 공급거부, 공표 등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과징금 부과

자료 : 홍정선(2009),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강운산(2011), 전거서, 재인용.

◎ 일례로 2024년 2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표 2〉와 같이 법 위반 시의 처벌 규정(행정벌, 행정질서벌, 행정제재 처분)을 명시·운영 중임(상세 처벌 규정 〈별첨 1〉 참조).

〈표 2〉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처벌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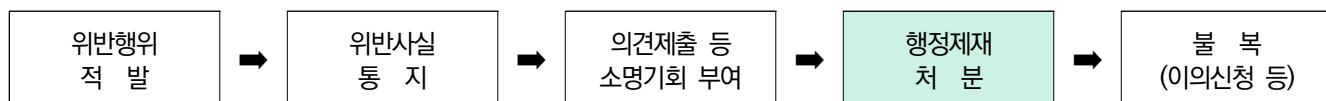
구 분	처벌 유형	내 용	근거규정
행정벌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제93조제1항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93조제2항
	징역/금고/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4조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94조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3가지 사유)	제9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5가지 사유)	제95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6가지 사유)	제96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4가지 사유)	제97조
	벌금	(양벌규정)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98조제1항
		(양벌규정) 해당 조문의 벌금(5가지 사유)	제98조제2항
행정질서벌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가지 사유)	제98조의2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18가지 사유)	제99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4가지 사유)	제100조
행정제재	등록말소	13가지 사유	제82조의2제3항, 제83조
	등록말소/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4가지 사유)	제83조
	영업정지/과징금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11가지 사유)	제82조제1항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하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고의, 과실 부실시공 시 5억원 이하)(7가지 사유)	제82조제2항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82조의2제1항
		2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82조의2제2항
	시정명령	시정명령(18가지 사유)	제81조
공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제84조의4	

주 : 2024.1.9.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기준(법률 제19968호).

4) 강운산(2011),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2011-20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용을 수정 기술함.

- ◎ 행정형벌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부과되나, 행정질서벌과 행정제재 처분의 경우 행정청에 의해서 부과됨.
- ◎ 이에 행정제재 처분은 통상 ①위반행위 적발 → ②위반사실 통지 → ③의견제출 등 소명기회 부여 → ④과태료 또는 행정제재 처분 → ⑤불복 및 처분 이행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함(행정질서벌 유사).

〈그림 1〉 행정제재 처분의 흐름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법제처(2008),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 강운산(2011), 재인용.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벌 현황 : 9.3천여 건/년

- ◎ 건설업과 관련한 행정벌(행정형벌) 처벌 현황은 통계 집계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시정명령 및 공표(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를 제외한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 처분 현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국한하여 살펴보더라도 <표 3> 및 <별첨 2>와 같이 최근 10년간(2020년 제외) 연평균 9.3천여 건이 이루어짐.

〈표 3〉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상 과태료 및 행정제재 처분 현황(시정명령 및 공표 제외)

(단위 : 건, %)

구분	업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등록말소	종합	433	481	470	372	318	296	335	363	241	252	3,561
	전문	1,381	1,015	1,639	1,662	1,022	735	727	659	505	617	9,962
	소계(A)	1,814	1,496	2,109	2,034	1,340	1,031	1,062	1,022	746	869	13,523
영업정지	종합	564	717	644	826	843	772	314	860	525	755	6,820
	전문	2,270	2,742	2,040	2,686	2,303	1,829	392	1,875	1,213	2,023	19,373
	소계(B)	2,834	3,459	2,684	3,512	3,146	2,601	706	2,735	1,738	2,778	26,193
과징금	종합	55	34	14	131	65	55	-	106	93	106	659
	전문	95	61	89	147	79	79	-	65	66	75	756
	소계(C)	150	95	103	278	144	134	-	171	159	181	1,415
과태료	종합	869	918	959	1,953	1,829	1,283	-	1,257	1,467	1,083	11,618
	전문	1,664	3,010	3,935	4,961	6,760	3,695	-	2,392	2,362	3,462	32,241
	소계(D)	2,533	3,928	4,894	6,914	8,589	4,978	-	3,649	3,829	4,545	43,859
총계	종합	1,921	2,150	2,087	3,282	3,055	2,406	649	2,586	2,326	2,196	22,658
	전문	5,410	6,828	7,703	9,456	10,164	6,338	1,119	4,991	4,146	6,177	62,332
	총계	7,331	8,978	9,790	12,738	13,219	8,744	1,768	7,577	6,472	8,373	84,990
	(비중)	8.6%	10.6%	11.5%	15.0%	15.6%	10.3%	2.1%	8.9%	7.6%	9.9%	100.0%

주 : 1) KISCON 내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의 제재처분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 철회, 가처분, 사면의 경우도 포함.

2) 2020년의 경우 조사 시점 행정처분 공개 종료 이후로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추세 판단 시 이를 제외하여 파악 필요.

◎ 행정처분 중 가장 다수의 처분을 차지하는 시정명령 제외 및 2020년 자료의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별첨 2>와 <표 4>, <표 5>의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상 과태료 및 행정제재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5개 처분 사유가 전체 처분(53개) 사유의 절대다수인 90%를 차지하고 있음.

- (위반 내용) 위반 내용의 경우 ‘(하도급)공사대장통보 위반’¹순위가 32,475건으로 53개 처분 사유 중 대부분인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26,850건, 31.6%)’²순위, ‘건설업 변경 사항 신고 위반(9,146건, 10.8%)’³순위, ‘폐업(5,304건, 6.2%)’⁴순위, ‘주기적 등록사항 신고 위반(2,189건, 2.6%)’⁵순위로 대부분 건설업 등록과 관련한 위반으로 처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53개 처분 사유 중 상위 5개 처분 사유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 (처분 종류)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제재 처분을 처분 종류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43,859건(51.6%)을 차지하였으며, 영업정지 처분 26,193건(30.8%), 등록말소 13,523건(15.9%), 과징금 1,415건(1.7%) 차지하고 있어 대체 가능한 과징금 처분보다는 영업정지 처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 처분 비중)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및 행정제재 처분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 22,658건(26.7%), 전문건설업 62,332건(73.3%)로 업체 수 비중(2021년 기준 종합건설업 17.7%, 전문건설업 82.3%) 대비 종합건설업의 처분 건수가 소폭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조사됨.
- 다만, 이는 행정제재 처분 내용 중 상당수가 종합건설업만을 대상으로 한 처벌 내용⁵⁾이기에 그러하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위반 수준은 업종과 관련 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됨.

<표 4>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유형별 과태료 및 행정제재 처분 현황

(단위 : 건, %)

위반행위 유형	세부 처분 사유 수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합 계	(비중)
건설업 등록	11	12,689	22,252	51	9,535	44,527	52.4%
시공 및 기술관리	8	736	523	274	318	1,851	2.2%
도급계약	5	-	20	1	32,532	32,553	38.3%
하도급계약	18	-	1,605	1,073	1,459	4,137	4.9%
시공능력평가	1	-	11	2	-	13	0.0%
청탁 및 뇌물수수	1	-	28	-	-	28	0.0%
행정처분 불이행	5	73	1,394	10	-	1,477	1.7%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25	360	4	15	404	0.5%

주 : 1) KISCON 내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의 제재처분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 철회, 가처분, 사면의 경우도 포함.

2) 행정제재 처분 중 시정명령 및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처분 건수 제외, 2014~2023년 과태료 및 행정제재 처분 실적.

<표 5>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세부 처분 사유별 처분 건수 상위 3개 유형

(단위 : 건, %)

건설업 등록			시공 및 기술관리		
1순위	등록기준 미달	26,850건	1순위	실태조사 보고 위반	762건
2순위	변경사항신고 위반	9,146건	2순위	기술인 자격증/경력증 대여	361건
3순위	폐업	5,304건	3순위	직접시공 불이행	274건

5) 대표적으로 하도급계약 허위 통보,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등 다수 하도급계약 관리 관련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과태료 및 행정제재 처분 위반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에 해당 행위 위반의 경우 특수한 경우(종합공사의 재하도급)를 제외하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만 처벌 가능.

〈표 5〉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세부 처분 사유별 처분 상위 3개 유형 -(계속)

(단위 : 건, %)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1순위	건설(하도급)공사대장통보 위반	32,475건	1순위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1,316건
2순위	도급계약 내용 중 일부 불명시	30건	2순위	무등록 (재)하도급	1,040건
3순위	도급계약 서면체결 불이행	27건	3순위	건설기계대금 지급 위반	334건
시공능력평가			청탁 및 뇌물수수		
-	시공능력평가 허위 제출	13건	-	뇌물수수 및 공여	28건
행정처분 불이행			다른 법률과의 관계		
1순위	시정명령 불이행	1,389건	1순위	다른 법에 의한 영업정지/등록말소 요구	242건
2순위	영업정지 위반	73건	2순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3건
3순위	시정명령 불이행(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발급)	6건	3순위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41건

주 : 1) KISCON 내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의 제재처분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 철회, 가처분, 사면의 경우도 포함.
 2) 행정제재 처분 중 시정명령 및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처분 건수 제외, 2014~2023년 과태료 및 행정제재 처분 실적.
 3) 53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과태료 및 행정제재 사유 중 8개 위반행위 유형별 처분 건수 상위 3개 유형 발체.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 처분 중 건설업 등록 관련 위반 처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안전관리, 부실공사의 방지 등을 위해 등록제 운영 과 이를 위한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 운영 및 이를 뒷받침할 등록 적격 여부의 신고와 실제 확인 등을 법으로 촘촘히 마련하고 있고 이를 위한 관리체계가 중층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임.
- ◎ 다만, 건설업 등록 관련 위반 처분 세부 사항 중 실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폐업’에 따른 등록말소와 산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사항이 아닌 경미한 법 위반행위라 볼 수 있는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위반’과 ‘건설업 교육 미이수’ 건수를 제외할 경우 실제 건설업 등록 관련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건수는 총 44,527건 중 14,839건(33.3%)을 제외한 29,688건으로 볼 수 있음.
 - 중대 건설업 등록 위반에 따른 처분 건수는 ‘등록기준 미달(26,850건)’, ‘주기적 등록사항 신고 위반(2,189건)’, ‘국가기술 자격증 등 대여에 따른 처분(232건)’, ‘건설업 등록증 대여(219건)’, ‘영업범위 위반(78건)’, ‘건설업 부정등록(74건)’ 순임.
- ◎ 그 외 부실시공 등의 ‘시공 및 기술관리 관련 사항의 위반(8개 유형)’과 ‘도급 및 하도급계약 관련 제도 위반(23개 유형)’, ‘행정처분 불이행(5개 유형)’, ‘청탁 및 뇌물수수 행위 적발(1개 유형)’ 등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37개 세부 사유 유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은 최근 10년간 총 40,046개임.
- ◎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53개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 처분 세부 사유별 중 가장 위반에 따른 처분이 많은 유형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공사대장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임(32,475건, 38.2%).

「건설법」 위반 행정처분 사유 1위 : 공사대장 통보제도 위반 사유 검토⁶⁾

- ◎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자가 기재·관리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와 하도급자가 기재·관리하며 당해 공사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포괄하여 통칭하는 제도임.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종합 및 전문 건설업)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확인 또는 수정요청)하도록 한 제도임.
 - (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하도급자(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을 통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임.

〈표 6〉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종합 개요

구 분	건설공사대장(발주자↔원도급)	하도급건설공사대장(발주자↔하도급)
제도 시행시기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통보하는 주체	원도급자(수급인)	하도급자(하수급인)
통보받는 주체	발주자(실수요기관)	
통보대상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VAT 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2004.1.1. 이후) ※ 건설공사대장 내 하수급인 정보는 하도급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도 기재·통보 대상 ※ 1억원 미만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미통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로서 하도급 금액이 4천만원(VAT 포함) 이상인 공사(2008.1.1. 이후) ※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 대상 ※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미통보 가능
통보내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 사항 (4개 부문 83개 기재사항)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 사항 (4개 부문 68개 기재사항)
통보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롭게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발주자 확인 후 수정요청 시 30일 이내 재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롭게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발주자 확인 후 수정요청 시 30일 이내 재통보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항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자료 : 건설산업정보센터(2019),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설명자료 일부 참조, 전영준·이광표(202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재인용.

- ◎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최초 도입 시에는 공사대장을 현장 내 비치하여 발주자, 감리자(現 건설사업관리자) 등 사업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사 개요(발주자, 공사명, 공사 장소 등)를 제공하

6) 본 절은 전영준·이광표(202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기술함.

기 위험이었으나, 실제 이를 활용하는 경우나 사업이해관계자의 인식이 극히 드물어 지난 2002년 9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자통보 의무화 제도로 확대 개편됨.

- 개편 당시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공사정보를 발주자에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기존 건설공사대장 활용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우리 건설산업의 정보관리 및 통계처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개편 목적을 밝힘.
- 구체적으로 당시 정부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화 제도로 건설공사대장 내 정보를 종합 관리하여 부실 건설기업의 퇴출,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 부실·불법 시공 방지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상시 감시함은 물론, 공사수행 상황의 실시간 확인, 건설공사 동향 파악, 허위실적 신고의 예방 등 정보관리 및 통계처리의 고도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제시함.

◎ 또한,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는 제도 이행력 강제를 위해 원·하도급자에게 전자통보 미이행 및 허위 보고 시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이에 반해 통보받는 주체인 발주자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확인에 대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발주자가 통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기에 제도 도입 목적을 벗어난 정보 취합·관리 목적의 제도로 볼 수 있음.

〈표 7〉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관련 행정제재 및 행정질서벌 처분 체계

관련 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제81조 제3호	미통보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하도급)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제99조 제11호	불이행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①
시행령 별표 7 2.처.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 시 과태료 ^① 금액 : 100만원(위반 횟수 무관)	
제99조 제3호	준공일까지 미통보·허위통보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하도급)공사대장 기재사항을 -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②
시행령 별표 7 2.바.	준공일까지 미통보하거나 허위통보하여 과태료 처분 시 과태료 ^② 금액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 이상(400만원) ※ 위반 횟수는 과태료 부과 시점 최근 1년간 기준		

◎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발주자에 대한 사업(건설공사) 내용 제공의 표면적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각종 현장 실태점검 대비 사전정보제공 목적과 △건설공사 정보관리 및 통계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행정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반 자료 수집)의 제도 운영이 주목적으로 판단됨.

- 지난 2021년 발간한 국가정보화 백서(7)에서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중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를 위한 시스템인 건설공사 정보시스템(CWS)과 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시스템인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에 대해 정부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 체계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7) 국가정보화 백서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3조에 근거하여 국가정보화 동향과 시책에 관한 내용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자료(한국정보화진흥원 발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관련 행정처분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 처분 중 가장 큰 비중(53개 행정제재 대상 유형 중 1위,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73.4% 해당)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제도의 개선을 꾀하지 않는 이상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은 <표 7>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공사 진행 중인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준공까지 미통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임. 하지만 실제 처분 집행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사전 제도의 안내나 시정명령 부과 없이 준공 이후 미통보를 이유로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고 있어 과실 또는 제도 미인지에 따른 미통보 시 이를 수정할 방법이 부재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실제 상대적으로 현장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또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다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⁸⁾

<표 8> 최근 10년간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과태료) 처분 현황

구 분	부과 대상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²⁾	2021	2022	2023	계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	종합 건설업	527	646	695	1,535	1,433	958	1,057	977	877	669	9,374
	전문 건설업	737	2,257	3,146	4,117	5,965	2,889	1,457	1,550	1,211	2,286	25,615
	소 계(A)	1,264	2,903	3,841	5,652	7,398	3,847	2,514	2,527	2,088	2,955	34,989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	종합 건설업	869	918	959	1,953	1,829	1,283	1,515	1,257	1,467	1,083	13,133
	전문 건설업	1,664	3,010	3,935	4,961	6,760	3,695	2,318	2,392	2,362	3,462	34,559
	소 계(B)	2,533	3,928	4,894	6,914	8,589	4,978	3,833	3,649	3,829	4,545	47,692
A/B(%)		49.9%	73.9%	78.5%	81.7%	86.1%	77.3%	65.6%	69.3%	54.5%	65.0%	73.4%

주 : 1) KISCON 내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의 제재처분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 철회, 가처분, 사면의 경우도 포함.
 2) 2020년의 경우 2020년 12월 15일까지 과태료 처분 현황(처분 공고일 기준)이기에 추세 판단 시 이를 고려하여 파악 필요.
 3)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행정제재) 처분 건수 제외.

◎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 9>와 같이 대부분 과실 또는 제도 미인지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건설 기업 대부분(86.1%)은 <그림 1>과 같이 현행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 처분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실제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응답한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전문 관리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등으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바쁜 업무로 인해 통보를 망각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금전적 이익 등을 위한 미필적 고의 또는 고의로 위반한 경우는 극히 일부임.

8) 비즈한국, “‘도덕적 해이 빠졌다’ 작년 10대 건설사 건산법 위반 행정처분 154% 증가”, 2023.1.18. 신문기사 등 언론 보도 참조.

〈표 9〉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 위반으로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받게 된 사유(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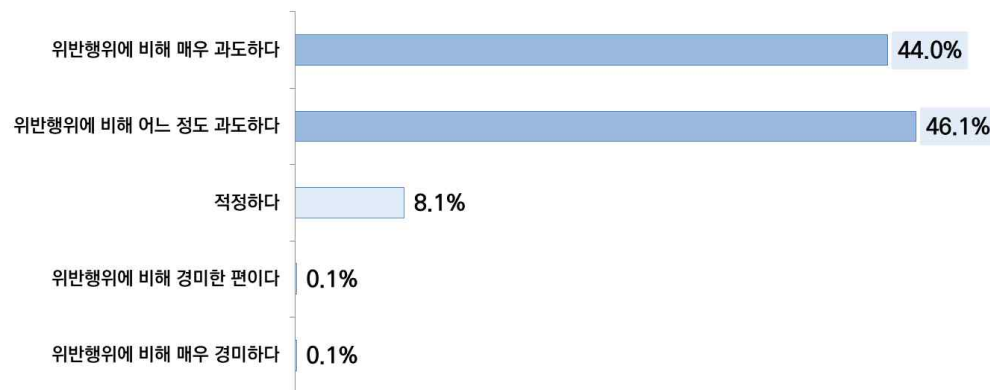
행정처분 사유	응답자 수	비율
망각으로 인한 신고기한 초과(준공 후)	58	47.2%
하도급계약 미통보 또는 추가신고 누락	36	29.3%
담당직원 업무 미숙지	11	8.9%
직원퇴사·업무변경으로 누락	4	3.3%
변경계약 미신고·지연신고	3	2.4%
서면으로만 통보(전자통보 미시행)	3	2.4%
인수한 회사 자료 이전 누락	2	1.6%
발주기관에서 신고하지 말라는 업무 지시로 인해(공사감독관 판단 오류)	2	1.6%
변경계약 이후 신고대상 포함임에도 신고 누락	2	1.6%
산재보험 소멸신고 지연으로 지연 신고	1	0.8%
공사중지 시 미통보	1	0.8%

주 : 최근(2021년 조사 시점) 3년간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N=175) 중 그 사유를 주관식으로 기재한 12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유사응답인 경우 해당 사유로 통합).

자료 : 전영준·이광표(202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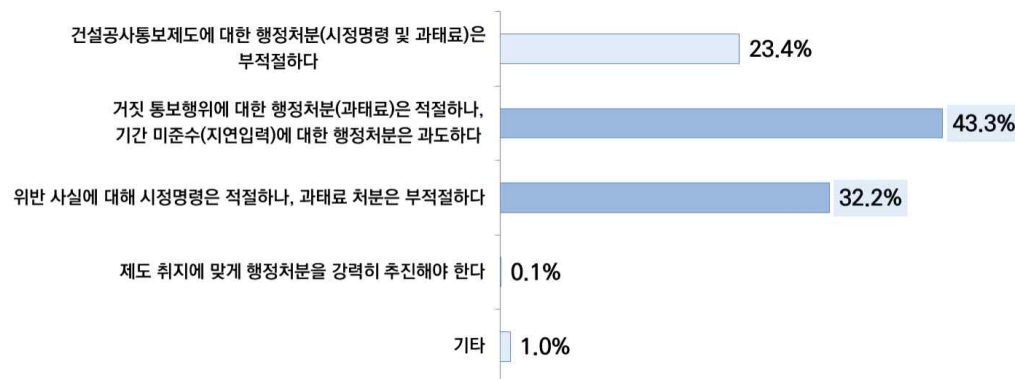
〈그림 1〉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의견 및 변화 방향(설문조사 결과)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의견】



주 : 총응답자(N=863) 중 무응답(N=13)을 제외한 850명 설문조사 결과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올바른 변화 방향에 관한 의견】



주 : 총응답자(N=863) 중 무응답(N=3)을 제외한 860명 설문조사 결과

자료 : 전영준·이광표(202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과다 행정처분에 따른 건설업 부담 경감의 핵심 :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의 기본 법이기에 업 등록부터 (하)도급계약, 시공 및 기술관리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규율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 또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에 앞 절에서 살펴본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개별 규제의 합목적성과 처분 수위의 적절성에 다툼이 존재할 수 있으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53개 행정처분 사유 대부분(별첨 1) 참조)이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됨.
- ◎ 하지만, 행정처분 사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과다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방법과 위반 시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 이에 입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랫동안 건설업에 부담과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를 유발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가지 개선 방안⁹⁾에 대해 기(既) 제시하였으며, 그 중 특히 정부의 타 전산시스템과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입력 정보 대부분이 중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주요 건설 정보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 및 하도급지킴이와 CWS 및 SCWS) 간 정보 연계 확대를 통한 입력 정보 간소화 유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다만,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규제의 개선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대한 처분 위임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용 방식 변경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건설업 부담 경감을 꾀하여야 할 것임.
 - 이미 지난 2021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 위반에 대해 전체 과태료 행정처분 중 건설(하도급)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사유가 건설기업 직원 법령 숙지 부족, 바쁜 현장 상황 등 경미한 사유로 과태료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도 운용 방식 변경을 통해 과태료 처분 감소를 추진함.
 - 보다 구체적으로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 위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KISCON)로부터 월 1회 위반 의심 업체가 통보되고 있었으나, 일부 짧은 공사 기간인 공사 현장의 경우 통보 시점 이미 준공되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위반행위 감소를 위해 과태료 대상이 되기 전 대상업체의 공사정보 조기 파악(재)건설산업정보원 협조)을 통한 안내문 발송의 적극 행정 추진으로 과태료 감소를 꾀하고 있음(그림 2) 참조).

9) ①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대상 공사의 축소, ②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정보입력 시기의 조정, ③ 주요 건설 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 확대를 통한 입력 정보 간소화 유도, ④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운용방식의 합리적 개선, ⑤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정보 활용성 극대화, ⑥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 운영 목적의 합리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영준·이광표(2021), 전거서. 참조.

〈그림 2〉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감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사례

현황 분석 및 문제점	◇ 전체 건설업 과태료 행정처분 중 건설(하도급)공사대장 미통보 관련 과태료가 높은 비율 차지 - 국토부 미이행 혐의업체 통보(월 1회) 이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조치 - 착공 후 3개월 이상 지난 자료이므로 이미 공사 완료된 사업자(과태료 대상) 존재 → 특히 업체 직원 법령 직원 숙지 부족, 바쁜 현장 상황 등 경미한 사유로 과태료 자주 발생
기존 절차	<p style="text-align: center;">①~⑤ 절차 3개월 이상 소요</p>
개선 절차	◇ 대상 건설기업 사전 안내문 우편(또는 문자) 발송을 통해 과실 및 제도 미인지 최소화 - (재)건설산업정보원 협조를 통해 공사 준공 전 자료 조기 확보(현행 ①단계 1~2개월 단축)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 건설업 관련 과태료 감소 적극 행정 추진”, 2021.9.13. 보도자료 참조 수정 기술.

◎ 상기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 행정 운영 사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 관련 경미한 위반(과실 또는 제도 미인지)에 따른 행정처분 최소화와 지역건설기업 활력 제고를 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또한 모색 가능함.

- 일례로 기초지자체가 시행하는 착공신고(허가) 시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를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주요 건설 관련 법령 참고 자료를 건설사업자에게 필증 교부 시 배부하고 참고 자료 내 체크리스트 형태로 놓치기 쉬운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는 ‘위반하기 쉬운 건설산업기본법 해설집’을 제작하여 관내 지역건설기업에 배포한 사례가 존재하기에 해당 내용의 참고를 통해 착공신고(허가) 시 신고 주체자인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배부한다면 과실 또는 제도 미인지에 따른 행정처분 감소 유도를 꾀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현행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는 최초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이 이를 반드시 준공 전까지 확인하도록 현행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못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발주청별 공사관리·감독관 업무 규정에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관련 교육 강화가 필요함.

-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시공자의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적정 통보 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관련 절차 명확화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법정 직무교육 내 해당 내용 포함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별첨 1】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처벌 규정 현황

구분	처벌 유형	내용	근거규정	
행정벌	징역	▷ 건설공사 안전 법령을 위반하여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주요 시설물(교량, 터널, 철도 및 시행령 제88조)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건설사업자 및 현장대리인)	제93조제1항	
		▷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건설사업자 및 현장대리인)	제93조제2항	
	징역 / 금고 / 벌금	▷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4조제1항	
		▷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94조제2항	
		▷ 다음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경우 	제95조	
		▷ 다음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 무등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 영위 건설업 등록 대여 건설업 등록 대여 알선 건설업 등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한 자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제95조의2	
		▷ 다음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 영위 하도급 자격 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보복조치 금지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제96조	
		징역 또는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공사 시공 자격 제한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원도급자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p>* 단, 하도급자가 하도급제한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p>	제96조
			▷ 다음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 무등록자가 표지·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시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시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 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97조

구분	처벌 유형	내용	근거규정
행정벌	벌금	▷ 제93조 위반행위 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 법인/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부과	제98조제1항
		▷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기준 위반 외 제97조 위반 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부과(양벌규정) * 법인/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부과	제98조제2항
행정 질서벌	과태료	▷ 다음 행위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하도급 금지에 대한 하도급자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단, 하도급자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그 위반행위를 목인한 경우) •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이행계획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8조의2
		▷ 다음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발주자 등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하도급계약인 경우 하도급자 제외)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공사대장)을 준공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민간공사 공동도급 계약 시 계약당사자 일방이 발주자에게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변경 요청 10일 전까지 다른 공동도급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민간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접시공계획 발주자 통보를 위반한 경우 • 하도급 및 재하도급 서면 승낙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재하도급에 대한 하도급자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하도급자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하도급자 현장배치기술인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 이 경우에도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목인한 경우는 제외) • 공공공사 하도급계획 미이행 시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 •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미이행한 경우 * 단,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같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제외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건설공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미이행,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위반하여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미이행, 발주자의 하도급 참여제한에 따른 하도급자의 변경요구 미이행, 발주자의 적정성 심사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건설업 신규 등록자가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해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합산 벌점 5점을 초과한 경우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을 발주자에게 미통보한 경우	제99조

구 분	처벌 유형	내 용	근거규정
행정 질서벌	과태료	▷ 다음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유 발생 시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미이행한 경우 • 건설기술인 배치 규정을 위반하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보고를 지연한 경우 • 건설공사 표지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불이행한 경우 	제100조
행정 제재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제38조의2 위반)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3년 이내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법인/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부과</p>	제82조의2 제3항
	등록말소	▷ 다음 사유 위반 또는 해당 시 등록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 건설업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신고를 한 경우 중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까지 미보완 시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 시 •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법인의 임원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결격사유 인지 시 3개월 이내 교체한 경우 제외)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를 위반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또는 미달한 경우 • 다음 사유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자의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 전문공사 원도급의 하도급 금지 위반 - 하도급자의 재하도급 위반 •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단,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보고에 한함) • 건설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다음 사유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타 사업자에게 이를 지시한 경우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타 사업자에게 이를 지시한 경우 - 입찰 또는 경매 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타 사업자에게 이를 지시한 경우 	제83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다음 사유 위반 또는 해당 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단,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외) 	제83조

구분	처벌 유형	내용	근거규정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고의·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제83조
행정 제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사유 위반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국토교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제3자에게 대여하였거나 대여받은 경우 • 시공능력평가 시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재하도급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중 제81조제1호,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의 다음 사항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및 지자체, 발주청의 현장점검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 시공상제도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상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및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다음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등의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미기재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및 기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하도급자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의무 위반 - 하도급 준공검사 및 인도 의무 위반 - 자재구입처 지정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위반 • 하도급자에게 시행령 제34조의8 각 호에서 규정한 부당특약을 강요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별점(시행령 별표 3)이 합산 별점 10점을 초과한 경우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발주자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사유 위반 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하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과(단,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 시에는 5억원 이하) • 건설공사 시공자격을 위반하여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건설공사 하도급 수급자격 또는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대기업 건설사업자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공사금액 하한을 위반한 경우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 하도급자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경우(단, 하도급자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원도급자가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원도급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제82조제2항

구 분	처벌 유형	내 용	근거규정
행정 제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다음 사유 위반 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법인/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부과 	제82조의2 제1항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다음 사유 위반 시 2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단,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제38조의2 위반)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인/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부과 	제82조의2 제2항
	시정명령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공사대장) 미통보 •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의무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등의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미기재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및 기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의무 위반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지급 요청 위반 - 하도급자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의무 위반 -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의무 위반 - 하도급 준공검사 및 인도 의무 위반 - 자재구입처 지정 등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위반 •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 하도급자에게 시행령 제34조의8 각 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 건설기술인 배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사시행 및 준공 표지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발주청의 하도급자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발주자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한 경우 	제81조
공 표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으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 공표 * 단,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 제외,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횟수 1회 계상 	제84조의4	

구 분	위반 내용		업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영업정지	시공 및 기술관리	기술인 자격증/경력증 대여	종합	15	6	2	24	11	2	2	34	3	10	109	
			전문	68	20	30	20	16	4	1	17	6	2	184	
		부실시공/조잡시공	종합	12	12	4	14	17	9	-	9	6	8	91	
			전문	1	9	9	4	15	3	-	9	4	5	59	
		직접시공 불이행	종합	3	5	3	11	7	3	-	2	2	3	39	
			전문	6	2	1	16	5	2	1	2	2	4	41	
	도급계약	공사실적 미달	종합	-	-	-	-	-	-	-	-	-	-	-	0
			전문	-	1	-	-	16	-	-	-	-	-	-	17
		보험료 등 의무부담비용의 불명시	종합	-	-	-	-	-	2	-	-	-	-	1	3
			전문	-	-	-	-	-	-	-	-	-	-	-	0
	하도급계약	무등록 (재)하도급	종합	15	10	17	18	11	11	10	28	53	22	195	
			전문	34	12	23	46	34	26	12	34	35	12	268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교부 불이행	종합	1	2	3	4	7	1	3	4	3	5	33	
			전문	3	14	24	55	42	40	3	22	23	20	246	
		건설기계대금 지급 위반	종합	2	10	11	8	6	11	2	4	7	8	69	
			전문	23	18	17	30	20	16	1	16	20	39	200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종합	5	13	6	8	6	5	2	8	7	10	70	
			전문	18	16	14	30	12	8	3	3	5	8	117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종합	-	-	-	-	-	-	-	-	1	-	-	1
			전문	13	4	14	15	16	1	1	5	4	2	75	
일괄하도급		종합	9	6	4	5	5	5	-	3	2	1	40		
		전문	12	8	3	11	11	-	3	4	4	1	57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종합	-	-	-	-	-	-	-	-	-	1	2	3	
		전문	15	7	8	10	3	3	3	6	5	6	66		

구 분	위반 내용	업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영업정지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종합	3	5	17	7	10	10	6	8	13	19	98		
		전문	3	2	3	3	12	2	-	4	4	7	40		
	하도급계약 허위 통보	종합	1	1	-	3	-	-	-	1	6	-	12		
		전문	-	-	-	4	4	-	-	-	-	-	8		
	일반건설업체 간 하도급	종합	-	-	-	-	-	-	-	-	-	-	-	0	
		전문	-	-	-	-	1	-	-	-	-	-	-	1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종합	-	1	-	-	-	-	-	-	-	-	-	1	
		전문	-	-	-	-	-	-	-	-	-	-	-	0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종합	-	-	-	-	2	2	-	-	-	-	-	4	
		전문	-	-	-	-	-	-	-	-	-	-	-	0	
	재하도급 승낙 사항 허위 통보	종합	1	-	-	-	-	-	-	-	-	-	-	1	
		전문	-	-	-	-	-	-	-	-	-	-	-	0	
	행정처분 불이행	시정명령 불이행	종합	2	24	21	34	30	55	4	92	18	64	344	
			전문	82	62	55	101	157	149	10	174	53	192	1,035	
		시정명령 불이행 (건설기계대금지급 위반)	종합	-	-	-	-	-	-	-	-	-	-	-	0
			전문	3	1	-	-	-	-	-	-	-	-	-	4
시정명령 불이행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발급)		종합	1	1	-	-	-	-	-	-	-	-	-	2	
		전문	4	-	-	-	-	-	-	-	-	-	-	4	
시정명령 불이행 (하도급대금 등 지급 위반)		종합	2	1	-	-	-	-	-	-	-	-	-	3	
		전문	2	-	-	-	-	-	-	-	-	-	-	2	
시공능력평가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 제출	종합	1	2	1	-	-	-	-	-	-	-	4		
		전문	2	-	1	3	-	1	-	-	-	-	7		
청탁 및 뇌물수수	뇌물수수 및 공여	종합	1	3	-	-	-	-	-	-	-	-	4		
		전문	2	3	7	7	2	-	1	1	-	1	24		

구분	위반 내용		업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영업정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에 의한 영업정지/등록말소 요구	종합	8	12	8	4	7	11	-	2	5	12	69		
			전문	9	22	36	25	20	13	1	8	6	8	14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종합	4	4	3	5	6	6	2	14	11	13	68		
			전문	4	1	5	10	2	7	2	3	-	-	34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종합	5	1	2	2	3	9	-	-	1	5	28		
			전문	1	1	2	1	1	-	-	4	-	3	13		
		과징금	건설업 등록	영업범위 위반	종합	-	1	1	1	-	-	-	2	-	1	6
					전문	5	4	1	3	2	3	-	1	14	12	45
시공 및 기술관리	직접시공 불이행		종합	23	12	5	30	13	7	-	16	14	6	126		
			전문	7	1	3	28	13	12	-	2	2	-	68		
	기술인 자격증/경력증 대어		종합	8	1	2	9	4	-	-	25	1	3	53		
			전문	3	3	1	2	3	2	-	1	-	-	15		
	부실시공/조잡시공		종합	-	-	1	4	-	1	-	2	1	-	9		
			전문	1	-	-	1	-	-	-	-	-	1	3		
시공능력평가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		종합	-	-	-	-	-	-	-	-	-	-	0		
			전문	1	1	-	-	-	-	-	-	-	-	2		
도급계약	보험료 등 의무부담비용의 불명시		종합	-	-	-	-	1	-	-	-	-	-	1		
			전문	-	-	-	-	-	-	-	-	-	-	0		
하도급계약	무등록 (재)하도급		종합	-	-	-	44	30	25	-	44	48	69	260		
			전문	30	17	32	53	30	32	-	42	36	45	317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종합	1	-	-	-	-	1	-	1	-	1	4		
			전문	16	18	15	18	7	6	-	9	7	10	106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종합	-	-	-	-	-	-	-	-	-	-	0		
			전문	13	6	24	13	6	7	-	5	2	4	80		

구 분	위반 내용		업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과징금	하도급계약	일괄하도급	종합	20	16	4	12	10	11	-	3	6	1	83		
			전문	18	3	9	19	8	10	-	4	3	1	7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교부 불이행	종합	-	-	-	-	-	1	-	2	-	-	-	3	
			전문	1	4	1	8	5	4	-	-	-	-	-	23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종합	1	-	-	1	-	1	-	1	-	1	-	1	5
			전문	-	2	1	1	1	-	-	-	-	-	-	-	5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종합	-	1	-	-	3	1	-	5	9	10	-	29	
			전문	-	-	-	1	2	1	-	-	1	2	-	7	
		건설기계대금 지급 위반	종합	-	-	-	1	1	-	-	-	-	-	-	2	
			전문	-	1	1	-	-	1	-	-	-	1	-	4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종합	-	-	-	2	-	5	-	-	-	-	-	7	
			전문	-	-	-	-	-	-	-	-	-	-	-	0	
		하도급계약 허위 통보	종합	1	3	1	24	1	1	-	5	12	14	-	62	
			전문	-	-	-	-	-	-	-	-	-	-	-	0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발급 비용 불명시	종합	-	-	-	-	1	-	-	-	-	-	-	1		
		전문	-	-	-	-	-	-	-	-	-	-	-	0		
행정처분 불이행	시정명령 불이행	종합	-	-	-	1	1	1	-	-	2	-	5			
		전문	-	1	-	-	2	1	-	1	-	-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종합	1	-	-	-	-	-	-	-	-	-	-	1		
		전문	-	-	-	-	-	-	-	-	-	-	-	0		
	기타 다른 법 위반	종합	-	-	-	2	-	-	-	-	-	-	-	2		
		전문	-	-	1	-	-	-	-	-	-	-	-	1		
과태료	건설업 등록	변경사항신고 위반	종합	174	161	140	198	181	135	-	176	374	217	1,756		
			전문	857	680	753	743	686	752	-	744	1,071	1,104	7,390		
		건설업 교육 미이수	종합	-	-	-	5	29	13	-	19	33	6	105		
			전문	-	-	4	26	36	40	-	79	54	45	284		

구 분	위반 내용		업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과태료	시공 및 기술관리	기술인 현장 이탈	종합	7	3	4	7	-	-	-	-	-	10	31	
			전문	20	24	18	27	2	-	-	-	-	-	91	
		직접시공계획 미통보	종합	17	6	3	2	6	1	-	10	32	34	111	
			전문	14	15	3	-	2	-	-	1	-	-	35	
		실태조사 보고 위반	종합	-	-	-	-	-	-	-	-	1	-	-	1
			전문	-	10	-	-	11	1	-	2	1	-	25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발주자 미통지	종합	3	-	1	4	1	-	-	-	-	1	-	10
			전문	1	1	-	4	5	-	-	-	-	2	-	13
		공사표지 위반	종합	-	-	-	-	-	-	-	-	-	-	-	0
			전문	-	-	-	1	-	-	-	-	-	-	-	1
	도급계약	건설(하도급)공사대장통보 위반	종합	527	646	695	1,535	1,433	958	-	977	877	669	8,317	
			전문	737	2,257	3,146	4,117	5,965	2,889	-	1,550	1,211	2,286	24,158	
		도급계약 서면체결 불이행	종합	2	-	1	1	2	1	-	-	-	-	12	19
			전문	-	-	-	2	-	2	-	3	-	-	1	8
		도급계약 내용 중 일부 불명시	종합	-	1	2	8	7	6	-	1	-	-	2	27
			전문	-	-	-	-	1	1	-	-	-	-	1	3
	하도급계약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종합	132	95	107	183	161	160	-	72	138	127	1,175	
			전문	17	13	4	33	43	5	-	9	7	10	141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종합	1	2	3	4	5	2	-	-	1	1	19	
			전문	8	5	3	3	1	-	-	2	3	3	28	
		건설기계대금 지급 위반	종합	2	-	-	2	4	2	-	-	-	2	2	14
			전문	1	4	1	2	8	5	-	2	11	11	45	
		재하도급승낙 통보 의무 불이행	종합	2	2	-	2	-	3	-	1	6	2	18	
			전문	1	1	-	-	-	-	-	-	2	1	5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	종합	-	-	1	2	-	1	-	-	-	-	-	4
			전문	1	-	-	-	-	-	-	-	-	-	-	1
하도급계획 미이행	종합	2	2	-	-	-	1	-	-	3	1	9			
	전문	-	-	-	-	-	-	-	-	-	-	0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타 다른 법 위반	종합	-	-	2	-	-	-	-	-	-	-	2		
		전문	7	-	3	3	-	-	-	-	-	-	13		

CERIK

Global Knowledge Hub & Partner
Leading Beyond the Future

CERIK 하이라이트는
건설 관련 정책·제도 동향을 제공하며 수시 발간됩니다. (비매품)
발행인: 이충재
<http://www.cerik.re.kr>